55.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만 50세 직종 자동차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 1988년 11월 입사하여 2016년 4월까지 품질팀 및 엔진부에서 약 27년 5개월 동안 엔진검사,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5년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과 함께 우측 팔 위약감생겼고, 2015년 11월부터 좌측 위팔에도 비슷한 증상 동반되며 양측 위팔 떨림 발생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양측 무릎 내측 근육 떨리는 증상 발생하였고, 2016년 4월 11일 A대학병원에 내원해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020년 4월 기관절개술, 경피적 위루술 시행하였고 이후 추적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엔진부에 근무할당시 방청유, 휘발유, 부동액, 타이어 가루, 디젤 매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해당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8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확진 받은 2016년 4월까지 약 27년 5개월 동안 품질팀 및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품질팀에서 엔진검사 업무를 약 2년 3개월간 수행하였고, 엔진부 조립반에서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조립, 엔진출하 업무를 약 15년 1개월간 수행하였다. 이후 공정이전을 통하여 엔진테스트 룸을 제외한 엔진조립, 지게차운전,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다. 입사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0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2시간) 근무하였으며,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특근을 하였다. 개선특근은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근무와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고,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5년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통증 호전되었으나 5~6개월간 우측 팔의 근 위약감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상기 증상으로 2015년 6월 A대학 병원 내원해 근전도검사 시행 결과 우측 위팔 신경총병증 소견 확인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우측 상완이두근 근섬유다발수축(fasciculation) 증상 호소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좌측 위팔에도 비슷한 증상 발생하며 양측 위팔 떨림 및 위약감 악화되었다. 2015년 12월부터는 양측 다리 무릎 내측 근육이 떨리는 증상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2016년 4월 11일 A대학병원 내원해 근전도검사 후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나이 50세) 2020년 4월 호흡곤란 및 연하장애로 기관절개술, 경피적 위루술시행하였고 이후 추적관찰 중이다. 근로자 및 가족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4년이후 금연하였고 금연 전 흡연 기간·양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근로자 진술 상발병 전 1회/주 빈도로 소주 1~2병 음주하였으나 발병 후 금주하였다고 하였다. 의무기록상 흡연력과 음주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1년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병원 의무기록 상요관결석으로 치료 받은 적 있었다. 그 외에 질병력은 없었고, 근로자 및 가족 진술 상구로자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6년생)은 만 50세가 되던 2016년 4월 11일에 산발성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1988년 11월 입사하여 상병 확진된 2016년 4월까지 품질팀, 엔진부에서 엔진검사,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등이 있다. 근로자는 엔진부에서 약 25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5년 1개월동안 엔진 착화 테스트 작업을 하며 휘발유에 포함된 납, 벤젠 등에 노출되었고, 공정개선에 따른 용접 및 도장 작업 시 용접흄,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시 대기 중이던 물류차량에서 발생된 디젤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